

4 '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9

다. 의안번호 : 제2005 - 80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5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천원)	비 고
행정 재산	거창군 일원(미정)	건 물	1식	4,400,000	거창사과테마파크 사업
		토 지	100,000	1,800,000	
"	거창읍 동변리 산2-1	조형물	1식	150,000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마리면 말흘리 215-3	"	1식		
"	거창읍 일원	아파트	2동	150,000	공중보건의사 관사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군특44억원, 자체 18억원)의 사업비로 거창군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방재정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하고 있으나,

2005. 9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체결 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대정지를 선정토록 용역과업을 부과함에 따라 현재까지 대상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임.

○ 동 건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함.

◆ 거창사과조형물 설치 사업

○ 사과조형물의 설치 장소로는 고속도로변이 적정한 것이나 현재 88고속도로는 4차선 확장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고속도로관리청과의 협의와 향후 확장시 이설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국도변으로

대상지를 선정된 것으로 검토됨.

○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중보건 의사 관사 구입

○ 폐지된 (구)남하보건지소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4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남하면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중보건 의사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구입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려는 것임.

○ 현재 거창군내에는 총 30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건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남하보건지소 관사에 4명, 마리보건지소 관사에 4명, 주상보건지소 관사에 1명, 자체구입 거주 1명인 것으로 파악됨.

○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는 별도 관사를 구입해 주도록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관사를 구입제공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 규모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적정위치가 선정되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상지 확정 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은 사업의 거창사과의 품질을 한단계 상승시키고 관광상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은 승인하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차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심의키로 하고 심의보류안 제시

○ 사과조형물 설치사업은 거창사과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는 1개소를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보다 1개소는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므로 고속도로변에 장소를 재선정 신청토록 주문하며 심의보류안 제시

6. 수정안 요지

○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은 대상지 선정후 사과조형물설치사업은 88고속도로변에 대상지 변경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의보류하고, 공중보건 의사 관사구입 건은 동의

7. 심사결과 : 수정동의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